

##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

(앞쪽)

|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허가일 | 처리기간<br>보건복지부: 22일<br>시·도: 17일 |
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        |    |    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신청인<br>(대표자) | 성명 | 생년월일 |
|              | 주소 | 전화번호 |

|    |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|
| 법인 | 법인의 명칭      |      |
|    |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전화번호 |
|    | 합병 목적       |      |
|    | 사업의 종별      |      |

| 자산 | 기본<br>재산 | 목적<br>사업용 | 종류 | 규모 | 평가액<br>(천원) | 연간수익액<br>(천원) | 출연자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  |          |           | 계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   | 수익용      |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   |          | 계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   | 보통<br>재산 | 종류        | 수량 |    | 가액(천원)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
|     |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|
|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임직원 | 임원 | 직위   | 임기 | 성명             | 생년월일 | 주소 |
|     |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|
|     |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|
|     | 직원 | 총 인원 | 명  |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| 명    |    |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**보건복지부장관**  
**시·도지사**

신청인  
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신청인<br>(대표자)<br>제출서류 | <p>1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</p> <p>가.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·정관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</p> <p>나. 정관변경안 1부</p> <p>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</p> <p>라.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</p> <p>마. 재산의 평가조서 1부(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</p> <p>바. 재산의 수익조서 1부(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,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)</p> <p>2.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</p> <p>가. 합병취지서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</p> <p>나.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</p> <p>다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</p> | 수수료<br>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      | 1. 건물등기부 등본<br>2. 토지등기부 등본<br>3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|               |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